

만,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용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6조(용자신청 및 대상 선정) ①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용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적격자를 선정하고 용자하여야 한다.

제17조(용자한도 및 조건 등) ①시설개선자금의 용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용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용자금리, 용자조건, 용자절차 등 용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용자금의 대하) ①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하여 용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대하하여 주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와 자금을 대하받은 금융기관 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와 금융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 5 장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제19조(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부정·불량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대상, 신고대상별 보상금액, 보상금 지급방법·기준 및 지급제외 등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0. 12. 19.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11월 20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00년 11월 21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제77회(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2000. 12. 4) 상정

제7차 행정위원회(2000. 12. 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정 진)

가. 제안이유

여성특별위원회의 “남녀차별 국가법령 및 자치법규종합정비추진계획” 지침에 의거 조례 중 남녀차별에 따른 여성차별 조항을 개정하고 통장의 연령제한규정을 정함으로써 통·반장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제5조제2항제1호, 2호, 3호)

- 제1호 :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을 “65세 이하의 주민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자”로 개정
- 제2호 :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삭제
-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대완)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 구의 현행조례 제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제14조에 해당되는 남녀차별적 규정으로 서울특별시 여성특별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2000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시장의 “남녀차별 국가법령 및 자치법규종합정비추진계획”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친 사안으로서 현행 통·반장의 위·해촉 기준이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를 “65세 이하의 주민으로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자”로 개정하고, 제2호의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인정되는 자”와 제3호의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삭제하는 것이며, 부칙 제2항 경과규정에 “이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기 위촉된 통장은 임기 만료시까지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65세 이상의 현재 위촉되어 있는 통장에 대한 임기를 만료시까지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개정목적이 본 조례 제7조에 규정된 통장의 임무수행과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의 통장이 민방위 사태 발생시 65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심신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지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에는 자동적으로 통 민방위대장이 되도록 하는 규정과 일치시키고자함에 있어 특이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우리 구의 통장의 남·녀 현황은 전체 688명중 33.5%인 231명이 여성이고, 65세 이상 통장은 3.1% 22명, 60세 이상은 21.8% 150명으로서 현행 조례상에 특별히 여성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할 수 없으나 개정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자치구는 우리 구를 포함 9개이며 개정불필요 또는 금년에 개정계획이 없는 구는 16개로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고 통장의 연령과 임기 및 성차별 보완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됨.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1) 제4조(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는 규정은 장기간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제한이 요구되며
- 2)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의 “현행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을 “65세 이하의 주민중”으로 하는 것은 고령이라고 판단되고
- 3) 제7조(임무)제1항
 - 제3호의 “통·반적부 관리”는 폐지된 업무이며
 - 제5호의 “새마을사업추진 협조 지원”에 주민복지센터의 기능지원이 요구되며

- 4) 부칙 제2항(경과규정) “이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60세 이상의 기 위촉된 통장은 임기만료시까지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 조례 시행 전에 기 위촉된 60세 이하의 통장임기에 대한 규정이 결여되어 이로 인한 논쟁의 여지가 있어 기 위촉된 통장의 임기에 대한 종료시점을 명확히 하여야 할 문제점이 있음.

나. 주요골자

- 1) 제4조(통장의 임기) “연임”을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수정하고
- 2)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65세”를 “60”세로 수정하며
 -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삭제하고
- 3) 제7조(임무)제1항제3호 :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과 통·반적부 관리”를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으로 수정하며
 - 제5호 : “새마을사업추진 협조 지원”을 “주민복지센터 및 새마을사업추진 협조 지원”으로 수정하고
- 4) 부칙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신설하며
 - 제2항(경과규정) “이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60세 이상의 기 위촉된 통장은 임기만료시까지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이 조례 시행 전에 기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임기만료시까지 제4조 및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수정함.

5.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변안동의의견

의안 번호	관련 152호
----------	------------

제안년월일 : 2000. 12. 9.

제안자 : 빈웅길위원외1인

1. 변안이유

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 제2항(경과규정)은 “이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60세 이상의 기 위촉된 통장은 임기만료시까지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나. 이 조례 시행 전에 기 위촉된 60세 이하의 통장 임기에 대한 규정이 결여되어 이로 인한 논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기 위촉된 통장의 임기에 대하여는 현행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본 조례를 적용할 것을 명확히 하여 시행상의 문제점을 해소코자 함.

2. 주요골자

- (안) 부칙 제2항(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기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임기만료시까지 제4조 및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4조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0세 이하의 주민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자
-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한다.
- 제7조제1항제3호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과 통·반적부 관리”를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으로 한다.
- 제7조제1항제5호 “새마을사업추진 협조 지원”을 “주민복지센터 및 새마을사업추진 협조 지원”으로 한다.
-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기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임기만료시까지 제4조 및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정(안) 대비표

=====

현행	수정(안)	변안
제4조(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통장의 임기) 1회에 한하여 연임	제4조(통장의 임기) “수정안과 같음”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② 1.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2.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② 1. 60세 이하의 주민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자 2. 【삭 제】 3. 【삭 제】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② 1. “수정안과 같음” 2. “수정안과 같음” 3. “수정안과 같음”
제7조(임무) ① 3.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과 통·반적부 관리 5. 새마을사업추진 협조 지원	제7조(임무) ① 3.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 5. 주민복지센터 및 새마을사업추진 협조 지원	제7조(임무) ① 3. “수정안과 같음” 5. “수정안과 같음”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60세 이상의 기 위촉된 통장은 임기만료시까지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수정안과 같음”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기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임기만료시까지 제4조 및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2
----------	-----

제출년월일 : 2000. 11. 20.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여성특별위원회의 “남녀차별 국가법령 및 자치법규종합정비추진계획” 지침에 의거 조례 중 남녀차별에 따른 여성차별 조항을 개정하고 통장의 연령제한규정을 정함으로써 통·반장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제5조제2항제1호, 2호, 3호)
 - 제1호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을 “65세 이하의 주민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자”로 개정
 - 제2호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삭제
 - 제3호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남녀차별자치법규정비계획 [(기예07010-1074(2000. 6. 13))]

나.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다. 예산조치 : 없음.

라. 조례(안) : 따로붙임.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를 “65세 이하의 주민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기 위촉된 통장은 임기만료시까지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 (안)
<u>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u> ②..... 1.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u>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u> 2. <u>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u> 3. <u>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 부칙	<u>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u> ②..... 1.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u>65세 이하의 주민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능력이 있는 자</u> 2. (삭 제) 3. (삭 제)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기 위촉된 통장은 임기만료시까지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0. 12. 19.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11월 20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0년 11월 21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77회(제2차정례회) 제1차 위원회(2000년 12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가. 개정이유

-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 및 2000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정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총수 : 15인 이상 25인 이내
- 위원회 구성
 - 위원장(구청장) 및 부위원장(부구청장)
 - 위원 : 구의회 의원, 공무원, 민간전문가(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 임기 : 2년(연임 가능)